



제302회 정례회

2011. 7. 18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도경 의원 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장애인 지원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미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,
-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(안 제5조)
 - 장애인 돌봄, 인식개선, 교육, 사례관리, 상담지원, 역량강화 등
- 장애인가족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 활용 규정(안 제6조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지속적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수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현재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 전체를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기능을 지원함으로써
-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,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,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토록 하였으며,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도 뿐만아니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됨

【참고자료 1】

<전국 장애인 인구 현황>

(단위: 명)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
전국인구수	48,991,779	49,268,928	49,540,367	49,773,145	50,515,666
장애인수	1,967,326 (4.0%)	2,104,889 (4.3%)	2,246,965 (4.5%)	2,429,547 (4.9%)	2,517,312 (5.0%)

▶ 2010 장애인통계(고용노동부)

<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>

(단위: 명)

구 분	1995		2000		2005		2008	
	전체가구	장애인가구	전체가구	장애인가구	전체가구	장애인가구	전체가구	장애인가구
평균 가구원수	3.3	3.5	3.1	3.4	2.9	3.1	2.8	3.0

▶ 2010 장애인통계(고용노동부)

<우리 도 장애인 인구 현황>

(단위: 명)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충북인구수	1,488,945	1,488,803	1,493,065	1,506,608	1,519,587	1,527,478	1,549,528
장애인수	59,965 (4.0%)	67,086 (4.5%)	73,923 (4.9%)	79,826 (5.3%)	85,097 (5.6%)	90,958 (5.9%)	94,654 (6.1%)

▶ 2010 장애인등록현황(보건복지부)

【참고자료 2】

<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법령>

법령명		조항	주요내용
장애인관련법	장애인복지법	제5조 제9조	·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· 장애인복지정책의 적극적 홍보
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	제2조 제4조 제19조 제23조 (시행령)	·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서의 가족지원 ·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차별금지 · 보호자의 의무 · 가족지원의 방법
	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	제36조	·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
	국제장애인권리협약	전문 제23조	·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 ·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
기타 일반법	건강가정기본법	제21조 제22조 제25조	· 가정에 대한 지원 ·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· 가족부양의 지원
	한부모가족지원법	제5조의 2 제17조	·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· 가족지원서비스
	영유아보육법	제28조 제3조 제35조	· 보육에서의 차별 금지 · 보육의 우선 제공 · 무상보육의 특례
	아동복지법	제3조 제4조 제10조	· 장애유무로 인한 차별 금지 ·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· 아동장애유발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한 예방

【참고자료 3】

<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>

<광역자치단체 : 6개 시도>

시 도	조 례 명	제정일
인천시	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1. 1.10
광주시	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1. 4. 1
강원도	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	2009.10.30
충 남	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1. 1. 1
경 남	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0. 5. 6
제주도	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0.11.10

<기초자치단체 : 3개 시>

시 군	조 례 명	제정일
충북 제천시	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0.12.31
충남 아산시	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	2010. 1. 5
충남 서산시	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	2009.10.16